

나의 민원조회



선거·정치관계법 질의 선거·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정보공개청구 예산낭비신고 사이버감사실

선거·정치관계법 질의



귀하가 질의하신 선거, 정당, 정치자금 관련 질의 봇록입니다.

파일다운로드 오류 발생시

엑스플로러와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에서 내용으로 보내기 체크 후 엑스플로러를 재실행하세요.

* 질문 (비공개글)

작성자	강성준	작성일	2012.11.30
제목	선거권 관련 질의		
내용	<p>선거일 현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권이 있습니까?</p> <p>이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특히 벌금형은 제2호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선거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p>		

첨부파일

* 답변

담당부서	법규안내센터	전화번호	02-503-1790~1
------	--------	------	---------------

가. 일반범인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를 범한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범인 경우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자 포함)는 선거권이 없습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일부개정 : 2012.10.2 법률 제11485호]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종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답변

- 이하 생략 -

법규안내센터(국번없이 1390)



• 해당 법규안내센터 ☎ • ☎ 02-503-1790~1

인쇄